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대학의 장 직선제 및 학생 투표 반영비율 규정〉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45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호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9.
3. 회부연월일 : 2024.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 결정 시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직접·비밀투표로 규정하고, 그 투표에서 학생의 투표가 반영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교원, 직원 및 학생별 각 투표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투표로 대학의 장 후보자가 선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② (생략) ③ <u>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u> 1. <u>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u> 2. <u>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u> ④ ~ ⑦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u>추천위원회는 직접·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거쳐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u> ⑨ <u>해당 대학의 교원, 직원(조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학생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가</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진다. 다만, 선거일 공고일 현재 휴직·정직 중인 교원 및 직원과 휴학·정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⑩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다만,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총 투표 결과에 대하여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투표 결과가 환산 및 반영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협의를 거쳐 정하되,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u><신 설></u>	⑪ 교원, 직원 및 학생별 각 투표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대학의 장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다.
<u><신 설></u>	⑫ 그 밖에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u>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u>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u>제24조제8항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u>-----

현행	개정안
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1. 국립대학의 장 선출 현황

현행법상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¹⁾에 의해 해당

-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함. 이 때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두며, 그 추천 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 때 그 후보자의 추천은 2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함.²⁾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해당 대학의 교원, 직원, 재학생, 졸업생,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위원 구성비율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구성비율의 범위를 준수해야 함.³⁾

총장 선출에 있어 국립대에서의 직능단체별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023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 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학생 정원 등 해당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위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대학의 추천위원회는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대학의 교원

2. 해당 대학의 직원

3. 해당 대학의 재학생

4. 해당 대학의 졸업생

5.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교육·연구 또는 대학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수 합계의 1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합계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3.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2 이상일 것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학생 구성원의 투표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난 2020년 국립부경대학교 제7대 총장 선거에서도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투표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불공정한 투표 비율이 정해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바 있었음.

각 대학별 총장선거 당시 구성원별 투표 비율은 다음과 같음.

< 2019~2023년 실시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학내구성원 투표비율 >4)

(단위 : 년, %)

대학교	선거연도	학내 구성원 투표비율				
		교원	직원(교조 포함)	학생	동문	계
00대학교	2020	83.3	13.3	3.3		100
00대학교	2020	80	15	5		100
00대학교	2020	81.5	15.1	3.4		100
00대학교	2023	69.5	20.5	10		100
00대학교	2021	77	16	7		100
00대학교	2021	80.5	13.1	6.4		100
00대학교	2022	70	28(교직원 14+학생 14)		1	100
00대학교	2021	80	15	4	1	100
00대학교	2020	83.1	15.3	1.6		100
00대학교	2020	82.6	14.1	3.2		100
00대학교	2023	73.5	18.9	7.5		100
00대학교	2022	47.7	47.7	4.5		100
00대학교	2023	68.5	21.5	10		100
00대학교	2023	66	34(교직원 17+학생 17)			100
00대학교	2021	70	20	9	1	100
00대학교	2020	82.6	15.7	1.7		100
00대학교	2022	70	20	10		100
00대학교	2022	78.1	15.5	6.3		100
00대학교	2023	66.4	23.9	9.7		100
00대학교	2019	81.5	1.2	3.4		100
00대학교	2023	69	23	8		100
00대학교	2021	77	19.5	3.5		100

대학교	선거연도	학내 구성원 투표비율				
		교원	직원(조교 포함)	학생	동문	계
00대학교	2022	67	24	9		100
00대학교	2021	78	18	4		100
00대학교	2022	70	20	9	1	100
00대학교	2023	76	20	4		100
00대학교	2022	45.2	28.9	25.8		100
00대학교	2021	79	15	6		100
00대학교	2020	77	13.5	9.5		100
00대학교	2023	69	16.5	14.5		100
00대학교	2019	80	13.6	6.4		100
00대학교	2021	76	15	9		100
00대학교	2023	68.4	19.2	12.4		100
00대학교	2021	77.5	14.6	7.9		100
00대학교	2019	75.8	15.2	9		100
00대학교	2019	80	13	7		100
00대학교	2021	72	19	9		100
00대학교	2019	80	15	5		100
평균(2019~2023)		72.55	17.52	10		100

개정안은 대학의 장 선출방식을 선거인단 등을 거치지 않는 완전직선제로 규정하고, 그 중 학생 투표반영비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장 선출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2. 직접·비밀투표 방식의 도입 타당성

대학의 장 선출방식을 현행법과 달리 규정하는 것이 대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

4) 국립대학교 38곳 국정감사(2023) 제출자료, 김영호 의원실

장하고 있으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⁵⁾

「교육공무원법」상 선정방식도 시대가 바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처음에는 선정방식에 대한 일체의 규정이 없었으나, 그 방식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고, 선정방식도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및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에서,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및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바뀌는 등, 선정방식의 참여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

법률 제6400호, 2001.1.29., 타법개정	법률 제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법률 제1845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②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5)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법률 제6400호, 2001.1.29., 타법개정	법률 제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법률 제1845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 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u>1. 위원회에서의 선정</u> <u>2. 해당 대학 교원의 합</u> <u>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u> <u>른 선정</u>	<u>2. 해당 대학 교원, 직원</u> <u>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u> <u>과 절차에 따른 선정</u>

이상을 고려해볼 때, 개정안과 같이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헌법상 대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에에는 어려워 보임. 대학의 자유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그 범위는 위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오는 것이기 때문임. 다만, 선정방식을 직접·비밀투표로 변화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것은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학생의 투표반영비율 규정의 타당성

개정안은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평균 10% 정도에 불과하여,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투표반영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비율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비율을 50%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됨.

어떠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하위법령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실무에서 집행의 탄력성이나 신속한 대응 등이 중요시 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됨.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수록 상위법령에 규정하게 되며, 반대로 실무에서의 재량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하위법령에 규정하게 됨.

투표반영비율의 경우, 현재 학생들의 학내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권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현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반면, 그 비율을 입법정책적 결정을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정하게 된다면, 그 수치가 탄력적이나 신속한 변경을 요구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임. 따라서 투표반영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 자체는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⁶⁾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동 판례에서는 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출에 있어 교원과 직원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음.

6) 헌법재판소 2023.5.25. 선고 2020헌마1336

< 현재 2023. 5. 25. 2020헌마1336 결정에서 일부 발췌 >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교원의 임용이나 학술 연구의 인적·물적 기반 마련, 학술적인 분위기 조성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발전 방향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일은 학문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대학의 직원은 교원의 연구 및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수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의 본래적 기능인 학문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을 통하여 대학의 직원에게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그 참여 비율이나 참여 가치의 보장은 반드시 교원과 동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문적 활동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

반면 대학의 교원은 진리를 탐구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의 결과를 전달하여 개개 학생들의 인격 신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계승·창조하며 국가·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1991. 7. 22. 89헌가106 참조). 헌법이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다.

결국 위 조항이 대학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을 교원보다 낮게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동 판례는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일은 학문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며, 대학의 직원은 교원의 연구 및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수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의 본래적 기능인 학문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교원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판시함.

다만, 동 판례는 학생과 교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판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학생 또한 대학에서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출에 있어 학생의 역할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학생의 역할을 고려하여 투표반영비율을 정하는 것이 학내 민주주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교육부 및 관계기관 의견

1) 교육부 의견

교육부는 먼저 직선제 단일화에 대해 대학의 장 후보자를 대학 내부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직선제 또는 간선제로 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직선제로 단일화하는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투표반영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총장 후보자 선정시 교원, 직원,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은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학교별로 정하고 있는데, 특정 구성원의 투표반영비율을 명문화하는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2020헌마1336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교원이 주축이 되는 총장추천자선거는 대학구성원 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또 필요한 일로서 법률에 의하여 훼손됨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3) 전북대학교 학생회

전북대학교 학생회는 대학은 교원만이 아닌 직원과 학생까지 세 주체가 공존하는 곳으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이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역할로 인해 ‘교원’이라는 한 주체에게만 상당히 높은 투표반영률을 부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합리한 것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장 선출과정에 학생 투표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 참고자료

1) 기관별 의견제출 현황(총괄)7)

순	기관명	제8항 (직선제)	제10항 (학생 50% 이상)	제11항 (각 투표율 5%이상)
1	강원대학교		신중검토	
2	경북대학교		신중검토	
3	경인교육대학교		신중검토	
4	공주교육대학교		신중검토	
5	국립군산대학교		신중검토, 수정(특정직능50%이내)	
6	국립부경대학교		신중검토	
7	국립안동대학교		수정(학생 30%이상)	
8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수정(특정직능50%이내)	
9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신중검토	
10	부산대학교		신중검토	신중검토
11	전북대학교		수정(학생10%이상), 신중검토, 찬성(총학생회)	신중검토
12	제주대학교		신중검토, 수정(특정 직능 50% 이내)	
13	충남대학교		신중검토	
14	충북대학교		신중검토, 수정(학생 20% 내)	
15	한경국립대학교		신중검토	
16	한국교원대학교		신중검토 수정(학생 10%이상), 수정(교수 70이상),	
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중검토	신중검토
18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신중검토	신중검토
19	서울대학교 (국립대법인)		신중검토	
20	성신여자대학교 (사립대)	신중검토	신중검토	
21	영산선학대학교 (사립대)	신중검토	신중검토	
22	홍익대학교 (사립대)	신중검토	신중검토	

7) 전북대학교만 대학기관과 학생회 의견을 같이 제출했음.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입장문

대학총장 임용추천자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교련 입장문

1. 2024. 7.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정하는 선거(이하 “총장추천자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총장추천자선거에서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총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2.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총장추천자선거의 성격”과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교원·학생·직원 공동결정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이해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총장추천자선거에 교원과 학생 및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출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교원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다**”(헌재 2023. 5. 25. 2020헌마1336 결정).

따라서 “**교원이 주축이 되는 총장추천자선거**”는 결코 대학구성원 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또 필요한 일로서 **법률에 의하여 훼손됨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대학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연구와 고등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리하여 헌법은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의 주체는 교원이다. 학생은 연구와 교육의 수혜자다. 직원은 교원의 연구 및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수학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위헌법재판소 결정).

교원·학생·직원은 모두 대학의 구성원이다. 그러나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은 다르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다르다.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오로지 교원이

모든 결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 동등한 결정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교원·학생·직원의 공동결정이 필요한지(예컨대, 교원 채용에서 학생과 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 공동결정을 한다면 구성원에게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할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안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공동결정을 허용하더라도 교원의 주도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 수 없는 이유는 대학의 본질과 헌법적 기능에 따른 구성원의 지위·역할과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4.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학 구성원의 지위·역할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명시적으로 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4년 7월 1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원대 교수회장 우흥명	경상국립대 교수회장 민병익	경인교육대 교수협의회장 김철호
공주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조혜영	광주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이대현	국립강릉원주대 교수회장 최성범
국립공주대 교수회장 서정호	국립군산대 교수평의회 의장 조혜영	국립금오공대 교수회장 장진호
국립목포대 교수평의회 의장 정석원	국립부경대 교수회장 정석호	국립순천대 교수회장 한귀현
국립안동대 교수회장 안태창	국립창원대 교수회장 김경성	국립한국교통대 교수회장 정제순
국립한국해양대 교수회장 강은숙	국립한밭대 교수회장 이준우	대구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주현준
부산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이광현	부산대 교수회장 김정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평의회 의장 김완필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임정목	서울시립대 교수회장 한인섭	인천대 전체교수회장 옥우석
전남대 교수회장 김재관	전북대 교수회장 김동근	전주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송지환
제주대 교수회장 양창용	진주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최수남	청주교육대 교수협의회장 강병직
춘천교육대 교수회장 배성제	충남대 교수회장 최인호	충북대 교수회장 박종진
한경국립대 교수회장 공홍식	한국교원대 교수협의회장 이용기	한국방송통신대 전교협 회장 변지원
한국체육대 교수평의회 의장 안성환		

3) 전북대학교 학생회 입장문

-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김영호 의원의 대학의 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이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며, 적극 지지함을 전하는 바이다.
- 대학은 교원만이 아닌 직원과 학생까지 세 주체가 공존하는 곳이다.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이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역할로 인해 '교원'이라는 한 주체에게만 상당히 높은 투표반영률을 부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현재 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의 총학생회는 대학의 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 투표반영률을 높이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반영률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이미 학생외의 주체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부지기수다.
- 실제로, 전국의 국공립대학중 학생 투표반영률이 두자릿수가 되는 곳은 우리 전북대학교가 최초로 10%를 반영하였고, 이후 강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이처럼 대학 구성원 중 과반이 넘는 학생들이 오히려 대학의 장 선출 과정에서 10% 미만의 투표반영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 더욱이, 최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발표한 성명문 중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오로지 교원이 모든 결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 동등한 결정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라고 표현한 것은 같은 대학 구성체인 학생에 대한 모독이며 대학의 존재 이유를 쇠퇴시키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대학의 장 선출과정에서 학생 투표 반영율을 높일 수 있다면, 그간 총학생회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자 진정한 학내 민주주의로 다가서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